

1. 개정이유

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제30조(긴급수급조정 조치), 제33조(매점매석 행위의 금지)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긴급수급조정조치), 제7조(매점매석 행위의 금지)에 따라 마련된 「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시한을 8월 26일까지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고시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6년 8월 26일로 연장함
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」 제29조, 제30조
및 제37조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동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73호

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91호

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

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조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8월 26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적용한
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 제2조(적용시한) 이 고시는 시행 일부터 2026년 <u>6월 30일까지</u> 적용 한다.	부 칙 제2조(적용시한) 이 고시는 시행 일부터 2026년 <u>8월 26일까지</u> 적용 한다.